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150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6월 10일
발 의 자 : 서윤기, 노식래, 이영실,
김경영, 박기재, 박순규,
양민규, 오중석, 이동현,
이성배, 임종국, 한기영,
홍성룡 의원(13명)

1. 주 문

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,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- 출석 일시 : 2020.6.10.(수), 6.12.(금), 6.15.(월), 6.30.(화) <4일>
-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에서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